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 시 보

www.namwon.go.kr

<b>선 람</b>	기관의장

제 46 호                      2015. 5. 6(수)

## 공 고

- 2015년 4월 수시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1
- 남원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2

회 람										
--------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9

남원시 공고 제2015-604호

# 공 시 송 달 공 고

2015년 4월 수시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5. 6.

## 남 원 시 장

- 1. 제 목 : 2015년 4월 수시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 2. 공고기간 : 2015. 5. 6. ~ 2015. 5. 20.
- 3. 납부기한 : 2015. 5. 31.
- 4. 공시송달내용

2015년 4월 수시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며, 공시송달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5. 공시송달내역

납세자	납세자번호 (앞의6자리)	과세번호	세액합계	공고사유	간주납기
박*수	72.03.24	106001 2015 04 2 250 003785	58,820	이사감 반송	2015.05.31
이*만	48.06.21	106001 2015 04 2 390 003892	10,240	이사감 반송	2015.05.31
김*곤	55.05.18	106001 2015 04 2 420 003988	24,080	이사감 반송	2015.05.31
김*용	74.02.28	106001 2015 04 2 460 003930	28,310	수취인미거주 반송	2015.05.31
최*인	60.05.19	106001 2015 04 2 470 003863	141,940	수취인미거주 반송	2015.05.31
김*호	60.08.04	106001 2015 04 2 520 003727	6,870	이사감 반송	2015.05.31
정*라	78.05.04	106001 2015 04 2 560 003834	35,240	기타 반송	2015.05.31
백*일	76.10.15	106001 2015 04 2 570 003998	60,260	기타 반송	2015.05.31
이*원	95.01.25	106001 2015 04 2 590 003775	53,100	수령인없음 반송	2015.05.31
진*필	55.01.10	106001 2015 04 2 590 004025	50,440	이사감 반송	2015.05.31
박*의	79.03.04	106001 2015 04 2 590 004066	5,380	이사감 반송	2015.05.31

**남원시 공고 제2015 - 605호**

남원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6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관내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내용의 전부를 관련 법령 및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나.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 관행을 정비·개선하여 시장사용자의 권익 증진
- 다. 용어의 정비, 실익이 없는 규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최소화

**2. 주요내용**

- 가.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시장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사용허가신청서, 사용허가 기간, 사용허가신청 점포수 명시
- 다. 휴지·폐지 및 주소변동신고(안 제8조)
  - 시장사용 폐지신고서 등재
- 라.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마. 시장의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5월 26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701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 남원시청 경제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2)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경제과(☎063-620-63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남원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5. 5. .  
 제출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경 제 과 장

## 1. 개정이유

- 가. 관내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내용의 전부를 관련 법령 및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나.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 관행을 정비·개선하여 시장사용자의 권익 증진
- 다. 용어의 정비, 실익이 없는 규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최소화

## 2. 주요내용

- 가.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시장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사용허가신청서, 사용허가 기간, 사용허가신청 점포수 명시
- 다. 휴지·폐지 및 주소변동신고(안 제8조)
  - 시장사용 폐지신고서 등재
- 라.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마. 시장의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5. . . ~ 2015. .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3) 성별영향분석평가: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시장의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공설시장, 운봉시장, 인월시장을 말한다.
2. “상설시장”이란 매일 여는 시장을 말한다.
3. “점포”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시장 내 점포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르는 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시장의 운영 관리에 따른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위치와 시설) 시장의 명칭, 위치와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용허가) ① 시장 내 점포 또는 부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1일 노점은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점포의 종류 및 면적

3. 판매상품

4. 사용기간 및 사용목적

5.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계도서

② 사용자가 제1항에 규정된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 사용허가신청은 1세대 1점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필요시 4점포까지 허가신청할 수 있다. 1세대란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를 모두 포함한다.

④ 사용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 남원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남원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6조(입주금)** ① 남원시장은 제5조의 사용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입주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금은 공사비 총액의 범위에서 남원시장이 정하며 점포의 위치, 건물의 면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주금을 납입한 자가 시장의 사용을 폐지하거나 취소 당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의 청구에 따라 입주금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금을 반환할 때에는 체납된 사용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

**제7조(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① 사용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 의무를 타인에



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남원시장의 허가를 받아 상속인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증명 서류를 붙여 남원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휴지·폐지)** 사용자는 점포 사용을 포기하거나 허가 기간 내 휴지·폐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30일 전에 남원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점포시설변경)** ① 사용자는 남원시장의 허가 없이 기존 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그 밖의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변경 후 그 사용을 폐지할 경우에 남원시장은 사용자에 게 시설을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남원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면적에 따라 사용료를 월액으로 계산하여 당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
2.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의 변동으로 사용료가 조정된 경우는 고시 절차를 이용

③ 사용자가 남원시장의 허가를 받아 휴업할지라도 사용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남원시장이 필요에 따라 휴업을 하게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남원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사용료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사용료 반환) ① 남원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공익상 필요에 따른 사유로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2. 시장 사용 해지를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남원시장에게 사용료 등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시장의 정기일) 정기시장의 일정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별도의 허가를 받아 상시 여는 점포는 상설시장으로 본다.

제13조(허가취소)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사용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2. 허가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 3.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4. 허가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 5.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4조(청문) 남원시장은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원) 남원시장은 시장 관리를 위하여 시장 관리원을 두며, 시장의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16조(상인단체의 구성) 사용자들이 시장의 번영과 자체 경비, 화재예방 및 상호 친목을 위하여 자체적인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직규범과 해

산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남원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시장의 관리비용의 계상)** 남원시장은 시장의 전반적인 관리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8조(식품위생)** 시장 점포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 시설 기준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위험물 취급금지)** 시장에서 폭발성 또는 인화물질의 저장과 운반을 하거나 판매를 할 수 없다. 다만, 남원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위생관리)** 남원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시장의 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하거나 보건위생에 위해(危害)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화재예방)** 사용자는 사용 시설에 대한 소방 책임을 지며 폐시 중에는 화기취급을 못한다.

**제22조(소방시설)** ① 남원시장은 소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소방시설과 장비를 갖추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남원시장은 시장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임명하고,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책임진다.

1. 시장 구역의 순찰계획 수립 및 화기 단속
2. 소방계획의 수립과 시장 소방대 편성 및 소방훈련
3. 소방시설의 정비 및 유지관리
4. 화재 발생 시의 긴급 통보 및 필요한 긴급조치

**제24조(판매의 제한)** 남원시장은 시장에 반입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전부 또는 일부의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하게 할 수 있다.

- 1.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된 것
- 2.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

**제25조(야간경비)** 남원시장은 시설의 보호와 재물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조직에게 야간 경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업종 및 점포배열)** 남원시장은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점포 위치, 업종 조정 등 시장의 점포 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원상복구)** ① 사용자가 사망, 해산, 폐업, 허가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유족, 청산인, 대리인 등은 남원시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용하는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남원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물을 손상한 자에게 보수를 하게 하거나 보수에 따른 경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남원시장은 사용자가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지지 않는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시장의 위치와 시설(제4조 관련)

시장명	위 치	대지 면적	판매시설 면적
공설시장	남원시 의총로 51(금동)	15필지 22,264㎡	8동 4,874㎡
운봉시장	남원시 운봉읍 운성로 20	4필지 3,052㎡	3동 480㎡
인월시장	남원시 인월면 인월로 65	20필지 11,477㎡	7동 1,106㎡

[별표 2]

## 사 용 료 요 율 표(제10조 관련)

구 분	기 준	사 용 료
1. 상설 및 정기시장의 계속사용 가. 상설시장 · 점 포  · 노 점  곡물, 채소, 어류 판매를 위한 사용료 ┌ 종일 사용자 └ 일시 사용자  · 노 점 ┌ 종일 사용자 └ 일시 사용자  화물자동차 2톤 이상인 경우 1대당  화물자동차 2톤 미만인 경우 1대당	년 1㎡당  "  1일 3.3㎡당  "  1회  1회	· 토지는 공시지가의 $\frac{25}{1,000}$  ·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의 $\frac{25}{1,000}$  · 공시지가의 $\frac{25}{1,000} \times \frac{50}{100}$  200원 200원  100원 50원  500원  300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나. 정기시장 · 점 포	년 1㎡당	·토지는 공시지가의 $\frac{25}{1,000} \times \frac{80}{100}$ ·건물은 시가표준액의 $\frac{25}{1,000} \times \frac{80}{100}$
· 노 점	"	·공시지가의 $\frac{25}{1,000} \times \frac{40}{100}$
2. 상설 및 정기시장의 종일 또는 일시사용		
가. 상설시장 · 점 포		
ㄱ 종일 사용자 ㄴ 일시 사용자	1일 3.3㎡당	250원 200원
· 노 점		
ㄱ 종일 사용자 ㄴ 일시 사용자	1일 3.3㎡당	100원 50원
나. 정기시장 · 점 포		
ㄱ 종일 사용자 ㄴ 일시 사용자	1일 3.3㎡당	200원 100원
· 노 점		
ㄱ 종일 사용자 ㄴ 일시 사용자	1일 3.3㎡당	100원 50원

[별표 3]

정기시장 일정표(제12조 관련)

구 분	공설시장	운봉시장	인월시장
시 장 일	매월 4, 9, 14, 19, 24, 29	매월 1, 6, 11, 16, 21, 26	매월 3, 8, 13, 18, 23, 28





[별지 제2호서식]

허가번호 - 호

시 장 사 용 허 가 증 (제 5 조 관 련 )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시 장 명					
점포종류		점포번호		점포면적	
판매상품					
사용목적					
허가기간					
<p>「남원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사용을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남 원 시 장</p>					

[별지 제3호서식]

### 시장사용 폐지(휴지)신고서(제8조 관련)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시장명		점포번호	
	상 호		전화번호	
폐지(휴지)사유				
휴지기간				
<p>「남원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장사용을 폐지(휴지)하고자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신고인  (인)</p> <p>남원시장 귀하</p>				
붙임서류	- 시장사용허가증 (사용계약서)		수수료	
	(분실시 분실확인서)		없음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예고내용	남원시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검토의견(의견 제출내용)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